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	보고서명	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
	문의	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821, sohyun.kang@kcmi.re.kr)

- 최근 정부의 배당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,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배당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,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구조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
 -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, 과세 방식, 과세 대상,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,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과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최고 45%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, 양도소득은 대주주(종목당 50억원)에 한해 5천만원 공제 후 20%/25%의 단일세율이 적용
 -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로 인해,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58.8%에 이르는 높은 수준임
 - 분리과세·종합과세의 이원 구조와 다양한 조세우대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, 투자자가 사전에 세부담을 명확히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

-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
 - 첫째,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를 구축하여,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 - 단,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과세는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, 최소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

- 둘째,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%의 누진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,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, 세율의 하향 조정 또는 배당가산율의 상향 조정, 기타 보완장치 도입이 필요
- 셋째, 배당소득 과세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, ISA·IRP 등 주요 계좌를 중심으로 조세우대제도를 통합·정비하는 등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요구